

#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

'26. 1. 16.

재정경제부

# 목 차

I.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주요 추진과제 .....	1
II.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상세내용 .....	2
1. 경제대도약 지원	
1)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.....	2
2) 자본시장 활성화 및 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 .....	5
3) 지역성장 지원 .....	7
2.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	
1) 서민·중산층·다자녀가구 등 세제지원 확대 .....	10
2) 소상공인 등 세제지원 확대 및 상생협력 지원 .....	12
3) 납세자 권익보장 및 편의 제고 .....	15
3.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	
1) 세부담 정상화 및 과세체계 합리화 .....	17
2) 조세탈루 방지 및 징수 효율화 .....	21
III. 향후 일정 .....	23

# I.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주요 추진과제

## 1. 경제대도약 지원

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R&amp;D비용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·원천기술 범위 확대</li> <li>• R&amp;D비용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비용의 범위 확대</li> <li>• 통합고용세액공제 최소고용증가인원 수 규정</li> </ul>
자본시장 활성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대상 및 절차 마련</li> <li>• 투자·상생협력 촉진세제 개편</li> <li>• 대학의 수익용 자산 대체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구체화</li> </ul>
지역성장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액감면 등 구체적 요건 규정</li> <li>• 본사 지방이전 시 세액감면 사후관리 강화</li> <li>•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해소 지원</li> </ul>

## 2.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

취약계층 지원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세부내용 규정</li> <li>•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 범위 확대</li> <li>• 월세 세액공제 적용 다자녀가구 대상주택 범위 확대</li> </ul>
소상공인 증소기업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생계형 체납자의 납부의무 소멸 특례 세부규정 마련</li> <li>• 폐업 개사육농가에 대한 한시적 비과세 적용</li> <li>• 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 세부기준 규정</li> </ul>
납세자 권익보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자 선택 범위 확대</li> <li>• 공익법인 의무이행여부 보고서 제출의무 폐지</li> <li>• 납세자보호담당관 직무·권한 범위 확대</li> </ul>

## 3. 세부담 정상화 및 조세제도 합리화

세부담 정상화 과세체계 합리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전자신고세액공제 기준금액 합리화</li> <li>•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 자녀세액공제분 합리화</li> <li>• 금융보험업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항목 합리화</li> <li>•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간주자본세제 개선</li> </ul>
조세탈루 방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체납 실태확인원 비밀유지의무 위반 시 과태료 신설</li> <li>•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미제출 과태료 구체화</li> <li>•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 확대</li> </ul>

## Ⅱ.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상세내용

### 1 경제대도약 지원

#### 1.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

##### 【 미래첨단산업 지원 】

##### R&D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·원천기술\* 범위 확대 (조특령)

\* 연구개발공제율(%) : (일반) 2~25 (신성장원천기술) 20~40 (국가전략기술) 30~50

※ 「2026년 경제성장전략」(‘26.1.9.)에서 발표

##### ① (국가전략기술)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등 미래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분야 등 세부기술 신설·확대\*

\* (현행) 8개 분야 78개 기술 → (개정안) 8개 분야 81개 기술

분야	세부기술
반도체	(신설)차세대 MCM(Multi-Chip Module) 관련 신소재·부품 개발 기술
	(확대)에너지효율향상 반도체 설계·제조 → 패키징 기술까지 확대 (※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, 차세대전력 반도체)
미래형 운송·이동	(신설)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운송·추진 기술 (※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, LNG 화물창)
	(신설)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디지털 설계·생산운영 기술
수소	(확대)탄소포집 청정수소 생산 → 청록수소 기술 포함

##### ② (신성장·원천기술) 철강·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중립 분야 등 세부기술 신설·확대\*

\* (현행) 14개 분야 273개 기술 → (개정안) 14개 분야 284개 기술

분야	주요 세부기술
탄소중립(4개)	고로 용선 및 전기로 용강 합탕기술, 친환경 냉매 개발 기술 등
첨단소부장(4개)	고규소 함량 저철손 전기강판 제조기술(※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, 특수탄소강), 기능화 그래핀 기반 차세대 전자소재에너지시스템용 복합소재 제조공정기술 (※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, 그래핀) 등
바이오·헬스(1개)	동물용의약품 후보물질 생산기술
에너지·환경(1개)	이차전지 제조 공정 염폐수 재활용 기술
융복합 소재(1개)	고융점 금속 기반 4N급 염화물 또는 불화물 전환 기술

## □ R&D비용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비용의 범위 확대 (조특령)

※ 「2026년 경제성장전략」(26.1.9.)에서 발표

-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'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구매비'에 대해 R&D 비용 세액공제 적용

## □ 국가전략기술 등 연구개발시설 세액공제\* 적용방법 개선 (조특령)

\* 투자세액공제율(%) : (일반) 1~10 (신성장원천기술) 3~12 (국가전략기술) 15~30

- 국가전략기술·신성장 등 연구개발시설이 사업화를 위해 한시 활용되더라도 국가전략기술·신성장 등 연구개발시설 공제율 적용\*

\* 투자완료일부터 다음 3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국가전략기술 등 연구 관련 사용시간이 50% 미달 시 공제세액 및 이자상당액 추징

## 【 기업과세제도 합리화 】

## □ 통합고용세액공제 최소고용증가인원수 규정 (조특령)

※ 「2025년 세제개편안」(25.7.31.)에서 발표

### < 법률(조특법§29의8) 개정내용 >

- ◇ 중견·대기업은 최소고용증가인원수를 초과한 고용 증가분에 대해서만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

- 최소고용증가인원수의 구체적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

- 고용증대 유인 강화를 위해 중견기업은 5명, 대기업은 10명을 초과하는 고용 증가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적용

**통합고용세액공제\* 청년 판단기준 완화 (조특령)**

\* 청년(15~34세), 장애인, 60세 이상 등에 대해서는 우대공제액(+200~700만원) 적용

※ 「2025년 세제개편안」(25.7.31.)에서 발표

-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인 자가 연령 증가에 따라 34세를 초과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4년간(대기업은 3년) 청년으로 간주

**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 현물출자 과세특례 구체화 (조특령)**

**< 법률(조특법§38의4) 개정내용 >**

◇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 등을 다른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은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 산입

- 주식 등을 처분한 경우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방법 및 과세이연이 종료되는 주식 처분비율 등은 시행령에 위임

- (과세이연 종료) ① 피출자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을 50% 이상 처분하거나, ② 내국법인이 피출자법인의 주식을 50% 미만으로 보유하는 경우

- 주식처분비율이 50% 미만인 경우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에 처분한 주식 비율만큼 익금 산입

**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대손금\* 손금인정 범위 확대 (법인령)**

\* 「공정거래법」에 따른 채무보증,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및 해외자원개발사업 관련 해외현지법인에 행한 채무보증 등에 대해 구상채권 대손 발생 시 손금 인정

- 내국법인이 「국가자원안보특별법」에 따른 핵심자원 관련\* 해외 현지법인에 행한 채무보증에 대해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 인정

\* 핵심자원 및 그 핵심자원의 소재·부품 생산과 관련된 채무보증

## 2. 자본시장 활성화 및 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

### □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대상 및 절차 마련 (조특령)

※ 「2025년 세제개편안」(25.7.31.)에서 발표

#### < 법률(조특법§104의27) 개정내용 >

- ◇ 고배당기업\*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분리과세\*\* 적용
  - \* ①배당성향 40% 이상 or ②배당성향 25% 이상이고 이익배당금액이 10% 이상 증가
  - \*\* 세율 : (~2천만원) 14% (2천만원~3억원) 20% (3억원~50억원) 25% (50억원~) 30%
- 배당소득의 범위, 고배당기업 요건, 배당성향 산정방법 등 시행령에 위임

- (배당소득 범위) 현금배당액(중간·분기·특별·결산배당 모두 포함)
- (적용대상) 펀드, 리츠 등 유동화전문회사\*는 제외하되, 당기 순이익 '0' 이하인 적자배당 기업은 제한적\*\*으로 허용
  - \* 「법인세법」 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가 적용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법인
  - \*\* 전년대비 배당이 10% 이상 증가하고, 자본총액 대비 부채비율이 200% 이하인 기업
- (배당성향) 연결재무제표 기준 배당성향\*으로 산정
  - \* 현금 배당총액 ÷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당기순이익
  - ※ 연결재무제표 미작성 시 별도재무제표 기준 배당성향으로 계산

### □ 투자·상생협력 촉진세제\* 개편 (조특령)

\*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의 미환류소득(기업 소득 중 투자, 임금증가, 상생협력 지출액으로 사용하지 않은 소득)에 대해 20% 추가과세

※ 「2025년 세제개편안」(25.7.31.)에서 발표

#### < 법률(조특법§100의32) 개정내용 >

- ◇ 투자·상생협력 촉진세제 환류대상에 배당을 추가하고 환류범위 확대\*
  - \* (투자포함형) 60~80% → 65~85% (투자제외형) 10~20% → 20~40%
- 환류대상 배당의 범위 및 기업소득 중 환류비율은 시행령에 위임

- (환류대상) 해당 사업연도 중 지급한 **중간·분기·특별·결산배당**<sup>\*</sup>
  - \* 현금배당으로 한정하되, 자본준비금·이익준비금 감액배당은 제외
- (환류비율) 기업소득의 **80%**<sup>투자포함형</sup> 또는 **30%**<sup>투자제외형</sup>
  - \* (중전) 투자포함형은 기업소득의 70%, 투자제외형은 기업소득의 15%
- (기업소득 계산)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및 법령상 의무 적립금 환입액 포함
  -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은 '27년 배당분부터 기업소득 계산 시 포함

**대학의 수익용 자산 대체취득에 대한 세제지원\* 확대 (조특령)**

\* 대학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기존 자산 양도차익 중 대체취득분에 대해 법인세 과세이연(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 산입) 적용

※ 「2025년 세제개편안」(‘25.7.31.)에서 발표

**< 법률(조특법§104의16) 개정내용 >**

◇ **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 시 과세이연 대상에 유가증권\*** 추가

\* 유가증권은 대체취득 자산 처분시까지 과세이연

○ **유가증권 범위, 구체적인 과세이연 방식은 시행령에 위임**

○ (유가증권 범위) 국·공채, 상장법인 주식, 국내투자형 펀드\*

\* 국내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펀드

○ (과세이연 방식) 대체취득한 자산 양도 후 새로운 자산을 다시 대체취득하는 경우도 과세이연 적용(최종 처분 시 과세)

**코스닥벤처펀드 소득공제\* 대상 투자액 한도 확대 (조특령)**

\* 벤처기업투자신탁(코스닥벤처펀드) 수익증권을 투자일부터 3년간 보유 시 투자한 금액의 10% 소득공제 적용(투자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중 공제적용 연도 선택)

※ 「2026년 경제성장전략」(‘26.1.9.)에서 발표

○ 소득공제(투자금액의 10%) 적용 대상 투자액 한도를 1인당 누적 3천만원에서 연간 2천만원으로 확대

### 3. 지역성장 지원

#### 【 기업의 지방이전 유인 제고 】

#####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액감면\* 요건 규정 (조특령)

\* 위기지역(고용재난지역,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) 창업기업에 대해 소득·법인세를 5년간 100% + 2년간 50% 감면

##### < 법률(조특법§99의9) 개정내용 >

◇ 위기지역 내 실질적 투자·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·고용과 연계된 감면요건 신설

○ 구체적인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

○ 해당지역 내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, 상시근로자를 1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 세액감면 적용

##### 연구개발 우수인력 범위 규정 (조특령)

##### < 법률(조특법§12의2③) 개정내용 >

◇ 연구개발 우수인력 채용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\* 한도 확대\*\*

\*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 중 생명공학산업 및 첨단기술산업 등 업종에 대해 소득·법인세를 3년간 100%, 2년간 50% 감면

\*\* 투자누계액의 50% + 상시근로자 수×1,500만원(청년·서비스업·우수인력 2,000만원)

○ 연구개발 우수인력의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

○ (우수인력 범위) ①자연·이공·의학계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②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

##### 본사 지방이전 시 세액감면 제도\* 실효성 제고 (조특령)

\*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내에서 수도권 외로 본사 이전 시 최대 15년간 법인세 감면

○ 본사를 이전한 법인의 감면세액 추정 기준\*이 되는 수도권 사무소의 본사업무 인원 비율 축소(50%→40%)

\* 수도권 밖으로 본사 이전 후, 일정 규모 미만의 수도권 사무소 운영을 허용하되,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이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감면세액 추정

□ **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세제지원\* 확대 (조특령)**

\* 해외진출기업이 완전복귀하거나 부분복귀하는 경우 소득·법인세는 7년간 100% + 3년간 50% 감면하고, 관세는 5년간 완전복귀시 100%, 부분복귀시 50% 감면

○ 국내사업장 신·증설 후 4년 이내에 국외사업장 축소를 완료하는 경우에도 유턴기업 부분복귀 감면대상\*으로 인정

\* (현행) ①국내사업장이 없는 내국인이 신규창업하는 경우, ②국외사업장 축소 완료 후 3년 이내 국내사업장 신·증설하는 경우만 부분복귀로 인정

○ 국내사업장 신·증설 후 4년 이내에 국외사업장 축소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면세액 전액 추징

【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 】

□ **인구감소지역·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 취득 지원(조특령·소득령·종부령)**

※ 「2026년 경제성장전략」(26.1.9.)에서 발표

< 법률(조특법§71의2) 개정내용 >

◇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·종합부동산세 특례 대상 지역에 "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" 추가

○ 특례 대상주택의 소재지, 주택가액 등은 시행령에 위임

○ 1세대 1주택자 세컨드홈 특례\*가 적용되는 비수도권 인구감소 관심지역 주택의 가액기준을 기준시가 4억원 이하로 규정

\*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등 취득시 기존 보유주택에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
↳ (양도세) 12억원 이하 주택 비과세, 12억원 초과시 장특공제 우대  
(종부세) 기본공제 우대(9→12억원), 고령자·장기보유 세액공제 적용

○ 다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(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포함) 주택\*을 취득(26.1.1.~)할 경우, 양도세·종부세 부과 시 주택 수에서 제외

\*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은 9억원 이하, 그 외 지역 소재 주택은 4억원 이하

## □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주택 해소 지원(소득령·법인령·종부령)

※ 「2026년 경제성장전략」(‘26.1.9.)에서 발표

-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1주택자에 양도세·종부세 특례\*가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의 가액기준 상향(6→7억원)

\* 1주택자가 준공후미분양 주택 추가 취득시 기존 주택에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

↳ (양도세) 12억원 이하 주택 비과세, 12억원 초과시 장특공제 우대

(종부세) 기본공제 우대(9→12억원), 고령자·장기보유 세액공제 적용

- CR리츠가 매입하는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 법인 양도소득 추가과세\* 배제 및 종부세 합산배제(5년간) 지원기간 연장\*\*

\* 법인이 비사업용토지, 주택 등 양도소득의 10~20%의 세율로 법인세 추가 과세

\*\* (현행) '25.12.31까지 취득 분 → (개정안) '26.12.31까지 취득 분

## □ 프로젝트 리츠에 대한 현물출자 과세특례 구체화 (조특령)

※ 「2025년 세제개편안」(‘25.7.31.)에서 발표

### < 법률(조특법§97의9) 개정내용 >

- ◇ 내국인이 프로젝트 리츠에 토지·건물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납부이연 및 법인세 과세이연 신설

- 이연세액 납부방법, 사후관리 요건 위반 시 이자상당 가산액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

- (과세이연 종료)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50% 이상 처분하거나 리츠 해산 시 등에는 이연된 세액 전부 납부(법인은 익금산입)

- 주식처분비율이 50% 미만인 경우 주식처분비율만큼 세액 납부

- (이자상당가산액) 과세이연금액 × 납부·과세이연 일수 × 0.022%

## 2

##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

### 1. 서민·중산층·다자녀가구 등 세제지원 확대

#### 【 취약계층 지원 등 】

####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세부내용 규정 (조특령)

##### < 법률(조특법 §91의25) 개정내용 >

◇ 일정소득(총급여 7,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,300만원) 이하 또는 **소상공인** 청년이 청년미래적금에 가입 시(3년 이상) 이자소득 비과세(연간 납입한도 600만원)

○ **연령요건, 가입대상 소상공인 및 중도 해지사유 등은 시행령에 위임**

○ **(가입 연령) 19세 이상 34세 이하\***(병역이행시 복무기간 제외)

\* 단, '25.12.31. 기준 34세 이하인 경우 상품 최초 출시('26.6월, 잠정) 당시 34세 초과인 경우라도 허용

○ **(소상공인) 직전 과세연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자**

○ **(중도해지사유)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, 천재지변, 가입자의 퇴직 및 가입자의 질병 발생 등**

#### 야간근로수당등이 비과세\*되는 생산직근로자등 범위 확대 (소득령)

\* 일정 소득 이하 공장·광산 근로자, 어업 종사자, 미용·숙박등 서비스 관련 종사자가 받는 연장·야간근로수당에 대해 비과세

○ 최저임금 인상 수준 등을 반영하여 야간근로수당등 비과세 적용을 받는 생산직근로자 월정액·총급여액등 소득기준 **완화\***

\* (월정액 급여) 210만원 → 260만원 이하 & (총급여액) 3,000만원 → 3,700만원 이하

사립학교 사무직원등의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(소득령)

※ 「2025년 세제개편안」(‘25.7.31.)에서 발표

- 사립학교 사무직원등 「사학연금법」 적용 대상자가 받는 육아휴직수당의 비과세 한도를 일반 근로자 수준으로 인상\*

\* (현행) 월 150만원 → (개정안) (휴직일~3개월) 월 250만원, (4~6개월) 월 200만원, (7개월~) 월 160만원

**【 주거 안정화 지원 등 】**

월세 세액공제 적용 주말부부 구체화 및 다자녀가구 대상주택 범위 확대 (조특령)

※ 「2025년 세제개편안」(‘25.7.31.)에서 발표

**< 법률(조특법 §95의2) 개정내용 >**

- ◇ 세대주가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더라도 주거를 달리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에 대해 월세 세액공제 추가 적용

- 공제대상 무주택 맞벌이부부의 범위 등 구체적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

- (주말부부 범위) ①배우자 주소지가 세대주와 다른 시군구에 위치, ②배우자와 동거하는 직계존비속 등\*이 무주택자일 것

\*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,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

- (다자녀가구 대상주택) 3자녀 이상인 경우 대상주택 규모 상향\*

\* (현행) 85㎡(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100㎡) 이하  
(개정안) 지역구분 없이 100㎡ 이하

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대상 기자재 확대 (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)

- 농·어민의 영농·영어비용 경감 지원을 위해 사후환급 대상 농·어업용 기자재 확대\*(농·임업용 66→69종, 어업용 33→34종)

\* (농업용 기자재) 농업용 지게차, 콩나물 재배용기, 콩나물 두절기  
(어업용 기자재) 어업용 고압세척기

## 2. 소상공인 등 세제지원 확대 및 상생협력 지원

### 【 소상공인 등 세제지원 】

#### 체납액 징수특례\* 적용대상 특고종사자에 대한 재기 요건 마련 (조특령)

\* 폐업 후 재기한 영세개인사업자의 징수곤란 체납액 분납(5년 이내) 및 납부지연가산세 면제

##### < 법률(조특법§99의10) 개정내용 >

- ◇ 폐업 후 재기한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대상에 '3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중인 특수형태근로자' 추가
- 특수형태근로자의 구체적 재기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

-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연속하여 3개월 이상 고용보험료 납부 시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

#### 생계형체납자의 납부의무 소멸 특례 세부 규정 마련 (조특령)

##### < 법률(조특법§99의15) 개정내용 >

- ◇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사업 재기 지원을 위해 5천만원 이하 징수곤란한 체납액에 대해 납부의무 소멸 근거 마련
- 폐업 전 영세자영업자의 수입기준, 실태조사일 및 징수곤란 인정 체납액 등은 시행령에 위임

- (수입금액) 폐업 이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3년 평균 15억원 미만
- (실태조사일) 납부의무 소멸 특례 신청일의 다음 날
- (징수곤란 인정 체납액) 체납자가 재산을 보유한 경우 재산평가액의 140%를 초과하는 체납액도 징수곤란 체납액으로 인정

#### 폐업 개사육농가에 대한 한시적 소득세 비과세 적용 (소득령)

- 「개식용종식법」에 따른 폐업 사육농가에 대한 보상 지원을 위해 '27년까지 개 400마리 사육에 따른 소득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
- \* (현행) 소 50마리, 돼지 700마리, 양 300마리 등 → (개정안) 개 400마리(~'27년) 추가

**노란우산공제 해지 시\* 세부담 완화 및 납입한도 확대 (조특령)**

\* 폐업·경영악화 등 사유로 공제금 수령 시 퇴직소득으로 저율과세하고, 이 외 사유로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으로 종합과세

※ 「2025년 세제개편안」에서 발표(‘25.7.31.), 「25년 새정부 경제성장전략」에서 발표(‘25.8.22.)

- **(경영악화 요건)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사유 중 경영 악화에 해당하는 요건 완화\***

\* (현행) 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0% 이상 감소 → (개정안) 20% 이상 감소

- **(납입한도) 분기별 300만원 → 연 1,800만원으로 확대(‘26.7.1. 시행)**

**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 세부기준 규정 (조특령)**

— < 법률(조특법§115의2) 개정내용 > —

- ◇ **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한 한시적(‘26.4.1.~‘28.12.31.) 주세 감면(30%) 신설**

- **감면대상 주류의 범위, 감면한도 등은 시행령에 위임**

- **(감면대상) 알코올 도수 8.5도 이하, 불휘발분\* 2도 이상인 주류**

\* 전체 용량에 포함되어 휘발되지 않는 성분으로, 물·알코올을 제외한 당분 등

- **(감면제외) 전통주 감면을 적용받는 주류**

- **(감면한도) 연간 반출(수입)량 400k1**

**기부시 일반기부금\*으로 인정되는 사회복지시설 추가 등 (법인령)**

\* 법인이 일반기부금 단체에 기부 시 소득금액의 10% 한도로 손금 인정

- **사회복지시설 기부 활성화 지원을 위해 「건강가정기본법」상 가족센터, 「아동복지법」상 다함께돌봄센터,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상 갱생보호시설을 기부금 단체에 추가**

- **비영리법인의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비수익사업인 사회복지사업 제공 시설에 「건강가정기본법」상 가족센터, 「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상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추가**

## 【 상생협력 지원 】

###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 세제지원 구체화 (조특령)

※ 「2025년 세제개편안」(25.7.31.)에서 발표

#### < 법률(조특법§28의5) 개정내용 >

◇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가속상각\* 신설

\* 내용연수 단축을 통해 투자비용을 조기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

○ 구체적인 대상자산 및 가속상각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

○ (대상자산) 법인세법상 유형자산 중 사업용 자산\*

\* 영업권, 디자인권, 특허권 등 무형자산, 건축물·차량·운반구 등은 제외

○ (가속상각 범위) 기준내용연수의 50% 범위에서 가감 허용

###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세액공제\* 지원 범위 구체화 (조특령)

\* 내국법인이 중소·중견기업 보증·대출지원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5~10% 세액공제 적용

#### < 법률(조특법§8의3) 개정내용 >

◇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세액공제 대상에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을 추가하고, 공제대상 출연금으로 지원가능한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\*

\* 무보기금 외 상생협력기금 출연금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까지만 지원 가능

○ 지원가능한 중견기업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

○ (중견기업 범위) 매출액 3천억원 미만 기업으로서 내국법인과 위·수탁 관계\*에 있는 중견기업

\* 물품의 제조 등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기업, 수탁기업에 물품을 납품하는 중견기업, 그 밖에 내국법인이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견기업

### 첨단전략산업기금·공급망안정화기금 출연금\* 증여세 비과세 (상증령)

\* 기금 출연금은 대·중견·중소기업 전반에 걸쳐 첨단전략산업 지원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사업을 위해 지출

○ 첨단전략산업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을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 및 공급망안정화기금에 대한 출연금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

### 3. 납세자 권익보장 및 편의 제고

#### □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\* 지분율에 관계없이 납세의무자 선택 허용 (종부령)

\* 1주택을 공동 소유한 부부 중 1인(지분율이 큰 배우자, 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선택 허용)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

-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지분율에 관계없이 납세의무자 선택 허용, 부부 중 누구든 특례주택\* 취득 시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

\* 상속주택, 대체주택, 지방저가주택

#### □ 공익법인 의무이행여부\* 보고서 제출의무 폐지 (법인령)

\* 공익법인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 4개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주무관청 또는 국세청에 보고해야 함

- 한국학교·공익법인 등이 매년 제출해야 하는 의무이행여부 보고서 제출의무를 폐지(국세청 의무이행 여부 점검은 유지)

#### □ 납세자보호담당관 직무·권한 범위 확대 (국기령)

-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대상을 소규모사업자\*에서 전체 사업자로 확대

\* 업종별 기준금액(억원 이하) : (농업 등) 6 (제조업 등) 3 (부동산임대업 등) 1.5

#### □ 관세 간이정액환급\* 적용여부 변경 제한 합리화 (관세환특령)

\* 중소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위해 납부세액, 소요량 등의 복잡한 계산 없이 수출금액당 일정액을 환급하는 제도로 기업은 간이정액환급과 개별환급 중 선택

- 중소기업이 수출용원재료에 대해 관세 환급받는 방식을 수시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 제한 기간을 폐지·단축

<관세환급 방식 변경 제한 기간>

	현행	변경
간이정액환급 → 개별환급	2년	삭제
개별환급 → 간이정액환급	2년*	1년*

\* 소요량 계산 곤란 등 사유 시 제한 없음

불가피한 출국 취소 시 구매한 면세품의 회수\* 예외 인정 (관세령)

\* 면세품은 외국 반출을 조건으로 판매할 수 있으므로 출국 취소 등으로 외국 반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면세품의 회수·반품 필요

- 천재지변, 항공기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이 취소되어 면세품을 외국으로 반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회수 예외\* 인정

\* 여행자 휴대품 관세 면제 한도 이내의 물품 등으로 한정

소액화물 상표권 보호 간이절차 규정 (관세령)

※ 「2025년 세제개편안」(‘25.7.31.)에서 발표

< 법률(관세법§235의2) 개정내용 >

◇ 소액화물(관세청 고시가격 이하의 특송품·우편물) 상표권 보호에 대해서는 담보 제공, 통관보류, 유치 등의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 적용 가능

- 간소한 방법의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

- ①세관장의 침해의심 통보 → ②상표권자·화주 입증자료 제출 → ③통관보류·유치 여부 결정·통보의 간소화 절차 규정

\* (침해의심통보) 세관장은 상표권자, 화주 등에게 침해의심 사실 통보 (자료제출) 상표권자: 통관보류 희망 시 입증자료 제출 의무(미제출 시 통관 가능) 화주등: 미침해 입증자료 제출 가능 (결정·통보) 세관장은 제출자료에 근거해 통관보류·유치 여부 결정 및 통보

관세환급 관련 증명서\* 자율발급 절차 신설 (관세환특령)

\* 수출용원재료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해 수입원재료 납부세액 등을 증명하는 자료로 세관이 발급 (평균세액증명서, 수입세액분할증명서,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)

- (지정) 원재료 수입자 또는 관세사가 자율발급 신청 시 세관장이 법규준수도 등을 심사하여 성실업체 대상 자율발급자\* 지정

\* 자율발급자는 관세청 전산처리설비에 입력하여 증명서 발급(자동수리)

- (유효기간) 3년(취소 또는 갱신 가능)

### 3

##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

### 1. 세부담 정상화 및 과세체계 합리화

#### 전자신고세액공제\* 기준금액 합리화 (조특령)

\* 전자신고하는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에 전자신고 건당 1만원 또는 2만원을 세액공제

- 전자신고가 정착\*된 종합소득세,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기준금액 50% 인하(양도소득세는 현행 유지)

\* 전자신고율('24년): 종합소득세(99.8%), 부가가치세(98.2%), 법인세(99.7%)

	현행	개정안
소득세	2만원	1만원
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납세자	추가 납부·환급세액과 1만원 중 적은 금액	추가 납부·환급세액과 5천원 중 적은 금액
법인세	2만원	1만원
부가가치세	1만원	5천원
양도소득세(예정신고)	2만원	(좌 동)

####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 자녀세액공제분 합리화 (소득령)

- 자녀세액공제금액 인상분\*을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 반영하여 납세자 원천징수분 세부담 조정(근로소득간이세액표)

\* 공제금액(1명/2명/3명이상, 인당, 만원) : ('24) 15 / 20 / 30 → ('25) 25 / 30 / 40

자녀수	원천징수 시 자녀수별 공제금액(원/월)	
	현행	개정안
1명	12,500	20,830 (+8,330)
2명	29,160	45,830 (+16,670)
3명	54,160 * 2명 초과 시 1명당 25,000	79,160 (+25,000) * 2명 초과 시 1명당 33,330 (+8,330)

**금융보험업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항목 합리화 (교육세령)**

※ 「2025년 세제개편안」(‘25.7.31.)에서 발표

- 금융보험업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①**서민금융\*** 및 영세사업자가맹수수료 관련 수익 및 ②**신용카드 청구할인액**을 제외하고, ③**국채 매매 손익 통산\*\***을 허용

\* (은행) 햇살론뱅크, (카드) 햇살론카드, (저축은행) 근로자햇살론 등

\*\* 국채 거래(매각·상환)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을 수익금액으로 규정

**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간주자본세제\* 개선 (법인령)**

\* (간주자본세제) '지점'의 자산대비 자기자본 비율이 '본점+지점'의 자산대비 자기자본 비율에 미달 시, 그 비율에 상당하는 본점 차입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(과소자본세제)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출자액의 6배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

-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과소자본 지급이자가 없는 경우에는 **간주자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미적용\***

\* (현행) 외국은행 국내법인에는 과소자본세제만 적용되나, 외국은행 지점에는 과소자본세제와 간주자본세제 모두 적용(지급이자가 더 큰 금액을 적용)

**국외전출세\* 과세 대상 국외주식의 범위 (소득령)**

\* 거주자가 이민등으로 국외전출 시 보유 중인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

———— < 법률(소득법§118의9) 개정내용 > ————

◇ **국외전출세 과세 대상에 국외주식 포함**

- 국외주식에 대한 **구체적 과세 요건** 등은 시행령으로 위임

- 외국인근로자\*가 아닌 전출자가 보유한 국외주식의 총액이 **5억원을 초과**하는 경우

\* 외국인근로자가 근로 제공을 시작하기 이전에 그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취득한 국외주식도 국외전출세 과세 제외

**조특법상 상시근로자 총급여액 기준 정비\* (조특령)**

- 각종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판단 시 총급여액 기준을 8천만원 이하로 일원화

\*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 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(조특령 §17): 7천만원 → 8천만원  
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(조특령 §26의4): 7천만원 → 8천만원  
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(조특령 §100의32): 8천만원

**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(국기령)**

- 일반우편으로 발송 가능한 고지\*세액을 50 → 100만원으로 인상

\* (대상) 소득세 중간예납, 부가세 예정세액, 신고 후 무(과소)납부(원천세 포함)

**종합투자계좌(IMA)\* 수익에 대한 소득 구분 명확화 (소득령)**

\* IMA(Investment Management Account)는 고객 예탁 자금을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, 그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원금보장 상품

- 종합투자계좌\*(IMA) 수익에 대한 과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해당 수익을 배당소득으로 분류

**어업 감척지원금\* 등에 대한 소득분류 합리화 (소득령)**

\* 「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」에 따라 어선·어구 감척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지급하는 폐업지원금 및 매입지원금 등

- 사업자 간 형평성을 감안하여 감척지원금 등 어민이 어업과 관련하여 받는 지원금·보상금 등을 사업소득으로 규정

\* (현행) 기타소득 → (개정안) 사업소득

**가상자산 평가방식 합리화 (법인령)**

※ 「2025년 세제개편안」(25.7.31.)에서 발표

- 단시간에 거래가 잦은 가상자산 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가상자산 평가방법을 선입선출법에서 총평균법으로 변경\*

\* 개인(거주자)에 대해서는 총평균법으로 가상자산 평가(25.2월 개정)

**세무사·세무법인 업무에 대한 광고 세부 기준 마련(세무사령)**

**< 법률(세무사법§12의7) 개정내용 >**

◇ 공정한 세무시장 조성을 위해 **세무사·세무법인 업무에 대한 광고 기준 신설**

○ **광고의 방법, 금지되는 광고의 유형** 등은 시행령에 위임

○ **광고 담당 세무사의 성명 표기를 의무화**하고, **금지되는 광고 유형을 세분화\***하여 규정

\* 세무공무원과의 사적 관계 암시, 소비자가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, 소속 세무사가 아닌 자를 소속 세무사처럼 게시, 무료·최저가 표기 등

**조세감면제도 존치 의견서 제출시 포함 내용 구체화 등 (조특령)**

**< 법률(조특법§142④) 개정내용 >**

◇ 각 부처의 조세감면제도 존치 의견서 제출시 조세감면 필요성, 정책 목표 예상 달성시기, 세수감소 보완대책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

○ 구체적으로 포함될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

○ **조세감면제도 존치 의견서 필수적 포함 내용**

- ① (정책목적) 조세감면 필요성, 정부개입 타당성, 수단의 적절성 등
- ② (정책효과) 정책목표 예상 달성시기, 성과지표, 효율성·형평성 측면 효과 등
- ③ (재정영향) 예상 감면액, 유사 재정·조세지출, 세수감소 보완대책 등

○ **조세감면 관련 세수감소 보완대책 관리 강화방안 신설**

- ① 조세감면에 따른 세수효과-세수감 보완대책 비교표(재정중립총괄표) 작성
- ② 평가관련 조사·연구기관의 사전컨설팅 지원
- ③ 각 부처 세수보완대책 등의 예산당국 통보

**조세지출결산서 작성방법·제출시기 등 구체화 (조특령)**

**< 법률(조특법§142의3 신설) 개정내용 >**

◇ 조세지출결산서 작성(재경부) 및 자료제출(관계기관→재경부) 의무 신설

○ 구체적인 작성방법·제출시기·자료제출기관 등은 시행령에 위임

○ **(결산서 작성방법)** 감면규모 전망-실적 간 비교 분석 등 포함

○ **(결산서 제출)** 매년 8월 16일까지 국회 제출

○ **(자료제출기관)** 국세청, 관세청, 조세지출 관련 중앙행정기관

## 2. 조세탈루 방지 및 징수 효율화

### □ 체납 실태확인원 비밀유지의무 위반시 과태료 신설 등 (국징령)

※ 「2026년 경제성장전략」(26.1.9.)에서 발표

#### < 법률(국징법§10의2) 개정내용 >

◇ 국세청의 체납관리단 신설을 위한 실태확인원 채용, 체납자 실태확인 근거 및 실태확인원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

○ 구체적인 실태확인 방법·절차, 과태료 부과금액 등은 시행령에 위임

○ 실태확인원 채용 대상, 체납자 실태확인의 방법·절차, 실태확인원 지도·감독 등에 관한 세부내용 규정

• (채용) 「국가공무원법」에 따른 결격사유\*가 없는 자

\*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

• (방법) 주소지·사업장 등 방문 시 사전안내 및 증표제시 등

• (교육) 실태확인 방법 및 절차, 기초세법, 안전·보안 등 교육

• (감독) 실태확인원의 안전관리 등을 위한 주기적 지도·감독

○ 실태확인원이 업무상 취득한 자료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반 건수에 비례\*하여 과태료 부과(최고 2천만원)

\* Max [(위반 건수×50만원), 500만원]

### □ 외국법인 연락사무소\* 현황자료 미제출 과태료 구체화 (법인령)

\* 외국본사를 위해 광고, 선전, 시장조사, 정보수집 등 예비적·보조적 활동 수행

#### < 법률(법인법§94의2, §124) 개정내용 >

◇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\*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신설(1,000만원 이하, 구체적 과태료 금액은 시행령으로 위임)

\*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기본 사항, 외국 본사현황 및 국내 다른 지점·거래처 현황 등

○ 외국법인이 국내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 부과

## □ 마약류 관련 정보 수집 범위 확대 (관세령)

- 정보를 수집하는 마약류 범죄자의 범죄유형·경력을 확대하고, 해당 인명을 특정할 수 있도록 신상정보 구체화

\* (범죄유형) 밀수, 유통 범죄자 정보 → 투약, 밀조 범죄 추가  
(범죄경력) 수형(징역·금고·구류) 경력 → 유죄 확정(벌금형 추가) 경력  
(신상) <sup>국민</sup>생년월일 → 주민등록번호, <sup>외국인</sup>성명·생년월일 → 영문성명, 여권번호 추가

- 군검찰단에 의해 기소된 군인 마약사범(국방부), 마약류 오남용으로 수사의뢰된 과다처방자(식약처) 정보 추가 수집

## □ 승객예약자료\* 일부 미제출 시 과태료 도입 (관세령)

\* 승객예약자료(Passenger Name Record): 항공사 전산시스템 저장 탑승자 정보 21개 항목(신원, 동승자, 여행경로 등) → 전부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중

- 승객예약자료 10% 이상 미제출\* 시에도 과태료 부과\*\* ('26.7.1. 시행)

\* 미제출 비율은 항목별 가중치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고시한 방법으로 계산

\*\* (현행) 전부 과실로 미제출 시 과태료(회당 1~5회 25/6~10회 50/11회~100만원)  
(개정안) 현행 + 일부 미제출 시 과태료 도입(회당 1~5회 10/6~10회 25/11회~50만원)

## □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(소득령)

- 소득과약 기반 확충을 위해 2개 업종\*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추가(142→144개 업종, '27.1.1. 시행)

\* ①놀이방 등 보육시설 운영업(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라 설치·인가된 어린이집·유치원 제외),  
②숙식제공 하숙업 등 그 외 기타 숙박업(호텔업, 민박업, 숙박공유업 등은 현재도 적용 중)

### Ⅲ. 향후 일정

#### 1 개정대상 시행령 : 총 21개

##### □ 내국세(17개)

- 국세기본법 · 소득세법 · 법인세법 · 상속세 및 증여세법 · 종합부동산세법 · 부가가치세법 · 개별소비세법 · 주세법 · 교육세법 · 국세징수법 · 조세특례제한법 ·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·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, 과세자료의 제출에 관한 법률 시행령, 세무사법 시행령, 농·축산·임·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, 세수추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(신설)

##### □ 관세(4개)

- 관세법 시행령, 관세환급특례법 시행령, 관세사법 시행령, 안료색소의 관세율 변경에 관한 규정

#### 2 추진 일정

- '26. 1. 16.(금), 시행령 개정안 발표
- '26. 1. 19.(월) ~ 2. 5.(목), 입법예고
- '26. 2월중, 국무회의
- '26. 2월말, 공포